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7. 7 선고 2020가단10365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유한회사 C

2. D

변론 종결2020. 6. 23.

판결 선고2020. 7. 7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,734,037원과 그 중 49,489,977원에 대하여는 2019. 8. 3.부터 2020. 6. 3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유정훈

별지